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13

발의연월일: 2024. 7. 5.

발 의 자:한병도・이기헌・서영교

박희승 · 장철민 · 박수현

박 정ㆍ이해식ㆍ임오경

이원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증설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음. 그리고 이를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미국 등 주요국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에게 국내로 복귀할 유인을 제공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인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 104조의24제1항 및 제118조의2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2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을 "2027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대한민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서 <u>2024년</u> 12월 31일까지 국내	<u>2027년</u>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	
다. 이하 이 조 및 제118조의2	
에서 같다)에서 창업하거나 사	
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증설한	
부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구	
분경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감면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제118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제1	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①
04조의24제1항에 따른 대한민	
국 국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국내에서 창업	

하거나	사업장	을 신설	또는	증
설하기	위하여	<u>2024년</u>	12월	31
일까지	수입신	고하는	대통령	형령
으로 정	성하는 🤇	자본재에	대히	나여
제2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	할
수 있다				

- 1.·2. (생 략)
- ② ~ ④ (생 략)

<u>2027년</u>
<u>.</u>
1.·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